

**합천 대장경엑스포공원 조감도****목 차****■ 건설관련 소식 1**

- 경남도, 새해 건설공사현장 안전점검
- 경남도, 아파트 상시 감사 시작
- 올해 하천정비 사업에 2,512억원 투자
- 서민의 재산권행사와 주거생활안정 적극 지원
- 부동산정보 행정서비스 대폭 개편
- 민간자본 등 2조451억원 투입 34개 산업단지 신규 공급
- 거제 장목항 국가어항 승격
- 경남소방본부, 소방청사 신축 등 근무환경 개선
- 건축규제 개혁과 창조적 건축행정 노력도 전국 최우수
- 경남도,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점검 실시
- 소방관서 주택화재 대비 안심보험 가입 지원
- 정부 투자활성화대책, 경남도의 진해글로벌 테마파크 추진에 힘 실어
- 겨울철 폭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시설물점검

■ 지식정보 9

- 1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공표

- 과도한 기부채납 이제 그만
-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개별필지별 건축가능"
-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 마련
-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소규모 도시정비 추진
- '14년 주택거래량은 전국 100.5만건
- 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으로, 해외특허 취득지원
- 창조경제 실현하는 혁신형 기업입지, 조성
-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해 입지규제 완화세제지원
- 재건축 연한30년, 안전진단에 층간소음 포함
-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종합대책 마련
- 국토교통부 금년도 141건 신규공사 발주

■ 최신법령 및 법령해석 28**■ 신기술 정보 33****■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현황 40****■ 기술인 나눔 정보 41**

- 국토교통부 '15년 상반기 달라지는 제도

경상남도 새해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

▶ 1월 21일까지 동읍 ~ 한림 간 도로공사 등 44개 공사 현장 점검”



《 생림~상동간 도로 건설공사 》

경남도는 건설현장 ‘재해 제로화’를 위하여 1월 21일까지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수해 복구공사 등 건설공사 중인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 민원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대상은 창원시 북면 마산리와 대산면 북부리 12.03km 구간에 공사 중인 동읍~한림 간 4차로 건설공사 등 경남도내 44개 사업장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겨울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으로 주요 점검 대상은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동절기 설해와 한파대책 수립·이행실태, 건설사업장 대금지급 점검, 공사현장별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 각종 민원사항 등이다.

특히 수해복구공사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우기철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재해 위험구간에 대한 조기 공사 추진과 공정계획에 대해 지도 점검하는 등 사전 재해 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서일준 경남도 안전건설국장은 “동절기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시공과 공사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재해 발생이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도로과 도로계획담당
(055)211-4663

경남도, 아파트 상시 감사 시작

▶ 아파트 부조리 없어질 때까지 상시감사팀 운영
▶ 입주민이 중심, 투명한 주거문화 정착 기대

경남도는 지난해 실시한 아파트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이어 올해 감사관실에 공동주택감사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1월 20일부터 상시 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관리사가 의무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도내 929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집행, 관리비 집행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부당사용 등 공동주택 관리부실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결과 공금횡령, 유용 및 금품수수, 고의질서위반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 가구 중 5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현행 주택법령상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감사요청 요건과는 관계없이 입주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자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자유롭게 감사요청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감사요청 게시판을 개설하며,

아울러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부조리를 척결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감사관실 공동주택TF담당
(055)211-2183



경남도, 올해 하천정비 사업에 2,512억 원 투자

▶ 지방하천 1,968억 원, 국가하천 544억 원

경남도는 올해 국·도비 등 총 2,512억 원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고, 생태공간 조성 등 친수시설을 대폭 확충 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하천정비 사업비는 지난해 보다 215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남도에서 지방하천 71 지구에 1,968억 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 정비에 544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특히 경남도에서는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속사업은 2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고 신규사업 지구는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상반기 중 재정의 60%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에는 신규사업으로 그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하천정비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 되었던 양산시 덕계천, 사천시 묵곡천, 거창군 황강 등 3개 지구에 총 670억 원을 투입하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착공 할 예정이며, 현재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여가공간 확보를 위한 친수사업으로 창원시 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진주시 대곡천 등 11지구에 대한 소규모 일반하천 정비 사업을 착공하여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5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1지구, 생태하천 복원사업 2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11지구 등 총 20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여 집중호우 시 재해예방은 물론 친수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도 하천과 하천시설담당
(055)211-3933



경남도, 서민의 재산권행사와 주거생활안정 적극 지원

▶ 중소규모 주택 등 특정건축물 양성화 총 595건

경남도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시한인 1월 16일 까지 단독주택 437건, 다가구주택 155건, 다세대주택 3건 등 총 595건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 양성화 처리됐다고 밝혔다.

밀양시가 경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전체의 24%인 139건으로 가장 많은 양성화 실적을 올렸으며, 다음으로 창원시 88건, 거제시 62건 순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물이 완공되었으나, 건축 법령에 위반되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중소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이다.

해당 건축물은 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안전·위생·일조권에 악영향이 없는 경우에만 한해서 양성화가 결정되었다.

한편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을 방지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1980년, 1981년, 2005년, 2006년에도 시행되었다.

■ 자료 : 도 건축과 친환경건축담당
(055)211-4424



경남도, 부동산정보 행정서비스 대폭 개편

▶ 연간 1,500만 건 서비스 제공 우수기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

경남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련 서비스를 개편하여 한층 질 높은 대도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의 부동산 토지정보서비스(klis.gsnd.net)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여 개인정보 보안강화와 함께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관리되는 부동산행정정보를 시도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기능개발이 완료되어 사용자등록과 권한부여를 하기로 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부동산 관련 각종 통계와 기초 현황은 물론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정부 3.0 구현의 핵심 패러다임인 부처간 소통과 협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남도 부동산 토지정보서비스는 현재 약 1,500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일일 평균 무려 4만여 건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이와 더불어 경남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정보 대국민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표창을 수상하게 되는 영예도 안았다

■ 자료 : 도 토지정보과 토지정보담당
(055)211-4563



경남도, 민간자본 등 2조 451억 원 투입 34개 산업단지 신규 공급

▶ 산업용지 867만㎡ 공급, 기반시설 건설에 491억 원 재정 투입, 27,699명 고용창출 기대

경남도는 올해 민간자본 등 조성비 2조 451억 원을 투입하여 34개 산업단지 867만㎡의 산업용지를 새롭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산업단지 신규 공급 계획은 국가산업단지 개발 확정과는 별도로 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를 지정하여 공급할 물량이다.

또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491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산업용지 조기공급과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신규 산업단지 대상지는 실수요 기업의 요청으로 경남도에 제출한 55개 지구를 대상으로 입지여건, 입주 수요, 재원조달계획,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와 경남도가 조정 협의를 거쳐 착공이 확실한 지구로 최소화 하였다.

경남도는 실수요자들이 제출한 '산업단지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경남지역으로 산업용지 실수요자가 몰린 것은 인근 부산·울산에 소재한 기업들의 이전 수요와 경남 내 기업들의 확장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경남도는 이번에 결정된 대상지 이외에도 입주 수요가 확실하고 재원조달계획 등이 마련되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신규 지정 물량에 반영하여 기업들의 입지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또한 도는 산업단지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신청을 하면 주민설명회,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친 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산업단지에 지원하는 기반시설 예산은 총 491억 원으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에 426억 원, 공업용수 공급에 51억 원, 낙후된 지역의 농공단지 재정비에 14억 원이 지원된다.

현재 도내에는 189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102개 단지는 조성이 완료 되었고 87개 단지가 개발 중에 있다. 특히 경남에 신규 지정되는 34개 지구는 작년보다 26% 증가한 것으로 전국 산업단지 공급 92개 지구의 37%에 달해 '전국에서 최다'이다.

신규로 지정되는 산업단지의 고용효과는 약 27,669명으로 분석되어 지역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줄 전망이다.

시군	산업단지명	산단 종류	산업단지 면적(천㎡)
	34개소		8,675
양산시	석계2	일반	841
양산시	서창	일반	273
통영시	법송2	일반	87
함안군	칠북 화천	일반	291
김해시	이지	일반	306
진주시	금형(뿌리)	일반	964
창원시	죽곡2	일반	265
함안군	칠서 동비	일반	291
김해시	죽곡	일반	91
김해시	본산	일반	100
김해시	미래테크	일반	149
창원시	석곡	일반	162
밀양시	용전3	일반	253
양산시	외석	일반	289
함안군	부목2	일반	142
양산시	가산	일반	818
양산시	대동	일반	54
사천시	금진	일반	298
산청군	한방제약	일반	230
함양군	함양지역특화	농공	298
양산시	주남	일반	204
양산시	좌삼	일반	169
함안군	칠원 용산	일반	189
창원시	진해 거주	일반	317
김해시	원지	일반	223
함안군	칠북 성호	일반	299
김해시	A.M 하이테크	일반	170
창원시	대산2	일반	318
거제시	천마	일반	67
함안군	함안 가야	일반	127
김해시	진하	일반	150
함안군	칠서 태곡2	일반	42
사천시	향촌2	일반	71
함안군	대산 옥렬	일반	127

■ 자료 : 도 도시계획과 산업단지계획담당 (055)211-4343



경남도, 거제 장목항 국가어항 승격

▶ 시설투자비 국비 투입으로 개발 가속화 기대

경남도는 지방어항인 거제 장목항을 수산업 여건변화 등에 따라 국가어항로 승격되었다고 1월 2일 밝혔다.

이번 승격을 위해 도는 관계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승격 지정 요청하여 국가어항지정타당성조사용역 등 2여 년에 걸쳐 철저한 준비로 국가어항 승격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가어항으로 승격되는 거제 장목면 장목리 장목항으로 이번 승격에 따라 2015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한 후 2016년에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쳐 2017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어선의 안전한 정박과 수산물 양륙 뿐만 아니라 유통가공, 물류, 어촌 경제활동, 어촌·해양 레저관광 등 다양한 기능이 충족 될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을 갖춘 미래형 다기능어항으로 개발된다.

이번 장목항의 국가어항 승격으로 어항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며, 이에 도비 약 4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어항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도 해양수산과 어촌개발담당 (055)211-3824



경남소방본부, 소방청사 신축 등 근무환경 개선 박차

- ▶ 노후협소한 소방청사 이전 신축으로 근무환경 개선
- ▶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안전만족도 증대와 안전경남 실현

임시 소방청사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서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청사를 신축 해 오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4개 소방서를 신축(이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중 가장 먼저 첫 삽을 뜨는 소방청사는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인 의령소방서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906㎡ 규모로, 2015년 3월 실시설계 완료하여 5월중으로 소방서 신축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산청·함양·밀양소방서가 신축계획 중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906㎡ 정도로 군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소방서 신축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신축되는 소방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치료할 수 있는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하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여건이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군 제39사단 군부대 내에 위치한 소방항공대 청사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전 부지는 합천군 용주면 일원에 계획 중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2 층 연면적 1,350㎡, 계류장 1,060㎡ 정도로 예상된다.

■ 자료 : 도 소방행정과 장비담당 (055)211-5336

경남도, 건축규제 개혁과 창조적 건축행정 노력도 전국 최우수

- ▶ 2014년 건축행정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 ▶ 2013년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2년 연속 선정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대국민 불편해소 및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건축 임의규제 정비 및 창조적 건축행정 노력도”를 평가하였다.

최우수기관 선정에는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지역건축 규제 18건을 모두 신속히 폐지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조기에 설치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민원감축 노력도”를 중점 점검한 '2013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준용 경남도 건축과장은 “도는 빠르면서도 청렴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면서, “도민들과 기업의 경제활동과 주거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특히 경남미래 50년의 주요시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건축 규제 등을 과감히 개선·조치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건축과 친환경건축담당 (055)211-4425

경남도,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점검 실시

- ▶ 도내 157개동 3,579세대 건축·소방분야 집중 점검
- ▶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사항 발굴

경남도는 최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을 계기로 도내 도시형 생활주택 157개소에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3반 56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점검 총괄, 건축 관련 위법사항, 소방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점검 대상지역은 도내 전 시군이며, 대상 주택 수는 도시형 생활주택 157개소 3천579세대다.

유형별로 보면 ▲단지형 다세대 주택 48건 659세대, ▲단지형 연립주택 30건 679세대, ▲원룸형 주택 79건 2,241세대로 2013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건립된 주택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이 중 건축분야는 내화구조 성능 유지여부, 외부 마감재의 종류 및 외부 마감의 노후화 정도, 건축물간 이격거리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되며, 소방분야는 소방시설 설치 여부, 유지·관리 상태 등을 꼼꼼히 들여다 보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서 단지형 연립주택과 원룸형 2종류가 있으며, 일반 아파트와 달리 건축이나 화재예방 시설이나 규정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는 단순 시설이나 안전 미비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나,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고 유사 사례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사항 발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백운갑 경남도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도민을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사회재난담당
(055)211-4533

소방관서 주택화재 대비 안심보험 가입 지원

▶ 소외계층 화재발생 대비 신속한 복구지원 도와

경남소방본부는 주택화재를 대비한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화재피해를 입고도 자활능력이 없는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기초생활대상자 등 저소득층 세대이다.

보험 가입기간은 1년(일시납,소멸)이며 불입금액은 1구좌당 10,000원 ~ 15,000원 정도이다. 보험에 가입되면 화재발생 시 1,000만 원 ~ 2,0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2012년 5,750건, 2013년 6,175건, 2014년 7,532건으로 최근 3년간 모두 19,457건의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지난해 김해, 의령, 하동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3명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경남소방본부는 현재까지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시민봉사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군 지역단체 등에게도 참여를 유도하여 범 도민 나눔행사로의 추진은 물론, 행정기관과 사회단체 등과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 자료 : 도 예방대응과 화재조사팀담당
(055)211-5373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경남도의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추진에 힘 실어

▶ 연내 ‘신규 복합리조트 2개 내외 선정 및 투자제도 정비’ 밝혀

정부는 1.19(월)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핵심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연내에 “신규 복합리조트를 2개 내외 추가선정” 하고 “외국인 투자의 최대출자비율(현행 51%)을 폐지” 하는 등 투자제도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혀 그간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그간 경남도가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협의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며, 향후 중앙정부가 제시한 절차와 일정에 따라 충실히 진행될 경우 금년 연말에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투자자가 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추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로 인해, 그간 우리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더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또한, “진해가 복합리조트 사업지로 선정된다면, 경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5+1’ 핵심전략 사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되어 승풍파랑의 기세로 나아갈 ‘경남미래 50년’의 기본토대 구축이 연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복합리조트 개요

- 개념 : 차별화된 테마로 국내외 관광수요 흡인하는 복합레저 공간
- 복합리조트 구성 :
 - (숙박시설) 5성급 1,000실 이상
 - (카지노) 건축연면적의 5% 이내
 - (쇼핑) 20,000㎡ 이상
 - (선택시설) 고급식음, 엔터테인먼트, 문화 예술, 레저스포츠, 헬스의료 중 택2 이상

□ 신규 복합리조트 설립 주요사항

- 개발방향 : 연내 2개소 내외의 신규 복합 리조트 사업자 선정
- 추진일정 : '15년초 절차 착수, '15 하반기 사업자 선정
- 추진절차
 - 컨셉 제안요청 공고 및 접수 : '15. 6월
 - 1차 컨셉 평가 : '15. 7~8월 (개발 수, 지역, 시설기준 등 조건확정)
 - 공식 사업계획서 평가 공고접수 : '15. 8~11월
 - 최종 평가 선정 : '15.11~12월

■ 자료 : 도 투자유치단 글로벌테마파크담당 (055)211-3112



경남도, 겨울철 폭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 시설물 점검

▶ 노후주택, 농·축수산물 시설물 점검과 독거노인, 노숙인 건강관리 실태 점검 병행

경남도는 매년 찾아오는 겨울철 폭설·한파 등에 대비하여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정했으며, 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시설물별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시설로는 폭설·한파에 취약한 노후주택, PEB(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구조물), 도로결빙, 수도계량기 파손, 농·축·수산물 시설물 등이며, 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등에 대한 건강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점검 대상 시설은 노후주택 및 PEB 1,313개소, 도로시설 15,518개 노선(12,724km) 중 취약지역 31개소, 농·축산분야시설(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9,871개소, 어업시설(양식장) 444개소, 수도시설(급수 및 계량기 39만개), 노숙시설 4개소(노숙인376명), 독거노인(주거지) 121,952명이다.

한편,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중앙 관계부처(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복지부)에서도 1월 20부터 23일 까지 겨울철 폭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합동점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자연재해2담당 (055)211-4594

'1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표

- ▶ 타일, 벽지 등 건축재료 유형에서 바닥, 벽 등 시공부위 형태로 변경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공사비산출기준에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여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전체 2,495개 품셈 중 금년에는 총 348개 항목(상반기 54, 하반기 294)이 정비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목분야) 천공방법의 변화에 맞춰 기성말뚝기초에서 케이싱을 활용한 천공작업 및 해머비트에 의한 암반 천공을, 고압주입분사공법에서 초고압펌프(400kg/cm²)와 고압분사전용장비를 신규 반영하였다.

현장타설말뚝기초 적용규격을 1,000 ~ 2,000mm에서 2,000~3,000mm까지 확대하는 등 적용기준을 다양화 하고, 말뚝형성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하였다.

(건축분야) 철공사의 경우 성능이 개선된 재료의 사용실태를 반영하고, 다양한 도장면(콘크리트, 철재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장 후 바탕고르기 작업을 분리하였다.

수장 및 목공사는 타일, 벽지, 반자지 등 건축자재 재료 유형별로 분류하던 것을 바닥, 벽, 천장 등 시공부위 형태로 체계화하였다.

(기계설비분야) 공기조화 설비의 덕트시공 공법을 기존 현장제작 및 설치에서 완제품(공장제작) 반입 후 현장설치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하였다.

가스배관공사는 배관작업(m당)과 접합작업(개소당)을 분리함으로써 가스배관의 설치조건에 따른 합리적인 품셈을 마련하였다.

< 분야별 주요 내용 >

◆ 토목부문

◦ 기성말뚝

- 해머비트(T-4) 기준 제시 및 케이싱 활용공법 기준 반영
- 천공전용장비(파일드라이버) 적용에 의한 작업 반영
- 규격확대 : 현행 400~600mm → 개정 400~800mm

◦ 현장타설말뚝

- 천공 후 말뚝조성 작업은 RCD공법과 올케이싱공법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됨에 따라 관련 품 통합 제시
- 규격확대 : 현행 1,000~2,000mm → 개정 1,000 ~ 3,000mm

◦ 연약지반보강(고압주입분사공법)

- 분사주입전용장비에 의한 시공기준 제시
- 고압펌프 규격 확대(200→400kg/cm²)
- 규격확대 : 개정 800 ~ 2,000mm

◆ 건축부문

◦ 목공사

- 시공형태 변경으로 현장에서 시공 실적 및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항목 삭제 : 지붕틀, 아궁이 등

- 철공사
 - 도장 후 바탕만들기 기준 신설
 - 하도/중도/상도로 구분되었던 품을 1회(회수적용) 기준으로 제시
 - 현장적용 및 시공사례가 없는 페인트류 삭제
- 수장공사
 - 시공부위로 표준 품 구성(바닥, 벽, 천장)
 - 현행 재료별 품을 재료유형별 기준으로 제시
 - * 현행 재료별(아스팔트, 리노륨, 비닐렉스) → PVC 계열
 - * 합판마루, 강화마루 → 플로어링 마루
 - 현장적용 및 시공사례가 없는 항목 삭제 (장판지, 창호지)

◆ 기계설비부문

- 기계설비 시공형태를 고려한 철 공사 기준 제시
- 덕트시공 시 완제품 반입 후 현장설치 기준 제시
- 가스배관 시공 특성을 고려한 부설 및 접합 기준 제시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1



“과도한 기부채납 이제 그만”

▶ 주택사업 기부채납, 부지면적 8~9% 이내로 제한

내년부터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주택재건축·재개발 등)의 기부채납 비율이 현재 부지면적의 약 14~17% 수준에서 8~9% 이내로 결정되는 등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등 주택사업을 할 때, 지자체가 과도하게 요구해오던 기부채납에 대하여 합리적인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대책)에 따라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다.

□ 운영기준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운영기준의 적용대상 및 운영방향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공공성 확보와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고, 해당 주택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주택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통하여 보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②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주택건설사업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정비사업은 9% 이내(적정부담률)에서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해당 사업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담률(적정부담률이하)의 1.5배(최고부담률)까지 조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의 용도지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고부담률에 10%p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도지역 변경 예시	적용 부담수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최고부담률+10%p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상업지역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 마련, 적용

③ 기타 운영사항

지자체는 각종 심의과정 중 기반시설 기부채납의 보상으로 받은 용적률이 감축되지 않도록 하고, 줄어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손실보전을 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15년 상반기동안 시범 운영하고, 이 기준을 개선·보완하여 기부채납의 부담수준을 제한하는 '15년 하반기 중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운영기준 시행을 통하여 주택사업 시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적정한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짐으로써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고, 사업의 촉진과 활성화를 기하게 될 것으로 본다.

<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 >

- 기준부담률
 - 주택건설사업: 8% 내
 - 정비사업: 9% 내
- 최고부담률
 - 위원회 상정 부담률의 1.5배
- 용도지역 각 호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하는 경우
 - 최고부담률+10%p
- 용도지역 간 변경하는 경우
 - 승인/지정권자는 별도의 부담기준을 정하여 운영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행복주택 입주기준 확정

▶ 확정된 입주자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이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 공급한다.
- ②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 기초단체장이 기준 및 절차를 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에 맞춰 선발
- ③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044)201-4522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개별필지별 건축 가능'

-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용지개발 활성화 기대
-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 기준 완화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 건축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 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 동안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지계획 시 수용세대수 상한선 폐지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별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선이 폐지되어 택지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계획 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②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 완화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블록을 지적 분할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 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동호회 등 공동소유의 블록인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매각된 용지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③ 기타 불필요한 규제 삭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하였다.

현행 단독주택용지 내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2/5 범위로 허용하고 있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함에 따라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
(044)201-3438

○.....○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 1.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법률(법률 제12959호, '14.12.31 공포, '15.4.1. 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 마련

민간택지 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 등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함

- (주택가격)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주택거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 (청약경쟁률)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이러한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전제조건인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의 현저한 상승 여부와 시장상황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의 활력 회복이 필요함을 감안할 때, 국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함

②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분양가상한제 적용 미지정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함.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 건축물은 현행처럼 전매제한이 배제됨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0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소규모 도시정비 추진

▶ 서울 목동·경북 영주 등 4곳 시범사업 추진

건축협정만 체결하면 2필지만으로도 재건축 등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규모로 추진되다보니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의 대안으로 이와 같은 건축협정사업이 추진된다. 서울 목동과 경북 영주, 부산 보수동, 전북 월명동 등 4곳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다.

※ 건축협정 대상지 현황

대 상 지	필지수	건축물 용도	비고
서울 양천구	2	다가구주택	1인협정(SH공사)
경북 영주시	3	주택	도시재생선도지역
부산 중구	5	주택+주차장	경관협정구역
전북 군산시	6	점포주택	도시재생선도지역

이번에 선정된 건축협정제도 시범사업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 경북 영주시 영주 2동, 부산 중구 보수동, 전북 군산 월명동 4곳으로 일반적인 재건축이나 재개발제도로는 주택개량이 어렵고, 주민과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큰 지역들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사업지는 SH공사가 다가구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할 지역으로서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맞벽으로 건축하고 주차장·조경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면 전용면적이 넓어지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영주시 영주2동 사업지는 도로가 없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3개 필지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협정 체결을 통해 도로가 없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부산 중구 보수동1가 사업지는 5개 필지로서 경사가 급하고 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필지의 규모도 50㎡ 이하 소규모로서 개별 대지 차원에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으로 건축협정 체결로 재건축 추진동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북 군산 월명동 사업지는 40년 이상된 노후 점포주택지 6개 필지로서 대규모 재개발사업지구(도시재생선도사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기존 도시 골격을 유지하면서 주민 중심으로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새로운 재건축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협정사업이란 》

도로 폭 또는 대지 면적이 적어서 건축법규 준수가 어렵거나,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건축이 곤란한 지역의 소유자들이 건축협정을 맺어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말한다. 협정을 체결한 지역은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법 등을 적용하여 용적률·건폐율, 조경,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대지의 분할 제한, 도로사선,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을 촉진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필지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어 2필지만으로도 협정 추진이 가능하다.



《 서울 양천구 사업대상지 》



《 경북 영주시 사업대상지 》



《 부산 중구 사업대상지 》



《 전북 군산시 사업대상지 》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4



'14년 주택거래량은 전국 100.5만건으로 '06년 이후 최대치 기록

▶ 전년대비 수도권은 27.3%, 지방은 11.1% 각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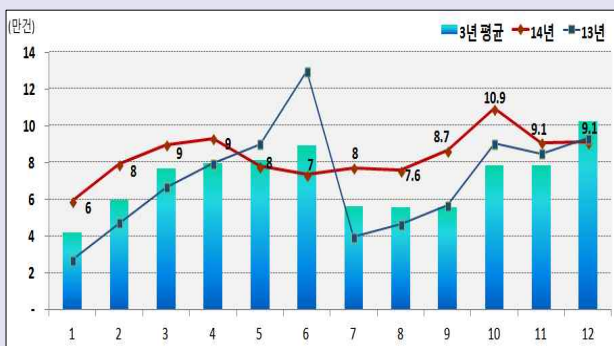
'14년 연간 총 주택 매매거래량은 1,005,173건으로 전년대비 18.0% 증가하여 '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이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7.24),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 등에 따라 시장 활성화의 기대감과 매매가격 회복세*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

'14.12월 거래량은 9.1만건으로 전월대비 0.1% 증가, 전년동월대비 2.2% 감소

실적공사비 단가는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1.5% 상승에 불과(불변가격 기준 36% 하락)하여 낮은 공사비로 인해 업계의 경영난 초래는 물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 저하로 국민의 생명과 편의를 위협할 우려도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연도별 주택매매거래량 >



< 월별 주택매매거래량 >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을 분석결과, 전국적으로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남 개포 주공(42.55㎡) : ('14.11, 4층) 67,000만원 → ('14.12, 1층) 67,500만원
- 송파 잠실 주공5(82.51㎡) : ('14.11, 8층) 123,000만원 → ('14.12, 7층) 121,000만원
- 강동 둔촌 주공4(99.61㎡) : ('14.11, 8층) 76,300만원 → ('14.12, 8층) 77,000만원
- 노원 중계 주공2(44.52㎡) : ('14.11, 6층) 16,200만원 → ('14.12, 4층) 17,500만원
- 분당 수내 푸른마을(신성)(84.72㎡) : ('14.11, 5층) 54,800만원 → ('14.12, 11층) 57,000만원
- 부산 해운대 우 동부올림픽타운(84.96㎡) : ('14.11, 11층) 30,500만원 → ('14.12, 13층) 28,000만원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9



건설신기술 특허심사 1년으로, 해외특허 취득 지원

▶ 국토교통부-특허청, 건설신기술·특허 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

건설신기술 특허 심사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특허청(장관 김영민)은 19일 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 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MOU는 우리 건설 관련 업체들이 최근 해외 수주경쟁에서 중국의 저가공세로 위협 받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주요 협력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①우수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지원, ②건설 분야 신기술과 특허의 창출·활용에 관한 사항, ③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등이다.

‘건설기술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지원’은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심사연계를 통하여 심사기간을 2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해외특허 출원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해외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의 해외시장 개척자금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또한, 특허의 질적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우수한 특허나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PQ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건설 분야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지식재산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업무협약을 통해 건설분야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이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받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5



창조경제 실현하는 혁신형 기업 입지, 전국에 조성한다

- ▶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도시첨단산단 6개소 신규 조성
- ▶ 공공청사 부지 등을 활용한 민·관 합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 ▶ 서비스산업·항공정비산업(MRO) 육성을 위한 맞춤형 입지 지원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국토부와 미래부는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집중된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제2 테크노밸리’를 개발하여 이 지역 일대를 창조경제의 랜드마크가 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한다.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는 IT 중심의 첨단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으나 개발이 완료되어 여유공간이 없고 기업 지원시설과 문화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인근에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지역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제2판교 테크노밸리는 도로공사 부지와 인근 금토동 GB지역, 외교부(KOICA) 일부 부지를 활용하여 43만㎡ 규모(現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2/3)로 개발하며, 現 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삼각클러스터(Triangle Cluster)로 육성한다.

제2 판교 테크노밸리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고, LH공사가 개발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며, 기업유치 등 구체적 개발은 경기도와 협력해서 추진한다. 올해 국토부, 미래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16년 지구지정 및 착공하여 ’17년 분양할 계획이다.



< 단지 조감도 >

용지는 판교 테크노밸리 공급가(약 1,200 ~ 1,300만 원/3.3㎡)의 70% 수준의 저렴한 가격(약 900만 원/3.3㎡)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2)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소 확대 개발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1차 지구* 3개소('14.3월 선정)에 이어 2차 지구 6개소를 새로 선정하여 지역의 첨단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창조경제 혁신거점을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한다.

- * 1차 지구 : 인천(비즈니스 지원단지), 대구(문화교육단지), 광주(R&D 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복합용지(산업+상업+주거 등),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녹지율 완화, 산업시설용지 내 연구·교육시설 입주,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다. 2차 지구는 첨단산업 수요가 풍부하고 입지가 우수한 대전,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 제주 등 6개 지역이 지자체 공모('14.6~12)를 통해 선정되었다.



< 대전: 창조경제기반형 >



< 제주: 감성오름문화단지 >



< 경산: 산학연 클러스터 파크 >



< 순천: 에코 R&D캠퍼스 >



< 남양주: 그린에너지 중심 첨단단지 >



< 울산: 그린카 네트워크 첨단단지 >

■ 자료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4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해 입지규제 완화세제 지원

▶ 관광시설 허용, 관광단지 수준 지원...해안·섬 투자 활성화 기대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돼 지구로 지정된 곳은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관광 인프라 시설을 설치하는데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이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9일(월)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해양관광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해안은 리아스식 서남해안, 3천여 개의 섬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역사적 탐방지 등도 풍부하여 관광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그간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효율적 활용이 제한되어 왔으며, 해양관광 인프라 투자에 대한 유인책 부재로 그동안 투자가 촉진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정부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위·시설 허용 관련 규제특례와 투자유인책으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양관광 인프라 시설 허용을 위한 규제특례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별법에 의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장하고,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으로 관리하여 해양관광을 위한 시설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에 애로가 없도록 인센티브 수준으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하기로 하였다.

※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음식점, 요양병원 등 설치 가능

또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에 애로가 없도록 인센티브 수준으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하기로 하였다.

** (예시) 자연환경보전지역(80%)은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② 재정·세제 지원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효과를 위해 추가적으로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 관광단지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 혜택 부여

국토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 내에 현장 실태조사,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요건, 인센티브 수준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금년말까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뛰어난 해양자연경관을 보유하고도 각종 입지규제로 개발이 이루어지 못한 해안·섬 지역의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져 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해안권발전기획과 (044)201-4546



재건축 연한 30년, 안전진단에 충간소음 포함

▶ 안전진단 '구조안전+생활불편 해소'...도심 신규주택 확대 기대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에 구조안전성 평가 외에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신설하고,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노약자 편의성 등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한다.

14년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0)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9.1 후속조치로서 재정비 규제 합리화방안 추진

①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

'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불편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

* '91년부터 지하주차장 설치(전체 주차면적의 30%)가 의무화되어 그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주차장 문제 심각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설비·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하는 안전진단기준 개선과 함께 재건축 연한도 단축하여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87~'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된다. 대상 세대수로는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 14.9%, 강남 외 지역이 85.1%를 차지하는 등 서울 지역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②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에 편중된 평가로서,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의 주거생활 불편 해소 요구에 부응하기에 미흡한 실정이었다.

* (평가 비중)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 가장 높음

앞으로는 주택의 구조안전 제고와 함께 주민불편도 해소하기 위해 종래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게 된다.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에는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하여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 타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한다.

주거환경 평가 시에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안전진단 기준에서 주거환경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향할 계획이다. 다만, 주거환경 부문 비율이 강화되더라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여전히 재건축이 가능하다.

안전진단기준에 관한 세부 제도개선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③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 폐지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연면적 규제는 시장 과열기에 중대형 주택 선호에 따라 초소형 주택을 구색만 맞춰 건설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소형주택 선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주택 규모 건설비율에 대한 세대수 기준은 유지하되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연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④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5%p 완화

주택 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오히려 상향*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개발시 임대주택 비율 17%에서 20%로 상향('1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 (세대수) 서울 20%, 인천·경기 17%, 광주 8.5%, 부산·대구·대전 5%

또한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모든 지자체가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5%p 완화한다. 다만, 지자체는 정비계획 수립 시 기존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한 주택 전체 세대수 중 기존 세입자가 입주한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이 지자체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5%p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별 구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단순화하고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의 하한은 폐지(고시 개정사항)한다.

* (개선) 다만, 세입자용 임대주택 부족 시에는 지자체장이 5%p까지 상향 가능

** 시·도지사가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times \frac{5}{100}$)

《 현 행 》

구 분		세대수 기준	연면적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7 ~ 20%	12 ~ 15%
	과밀억제권역 외	8.5 ~ 17%	6 ~ 12%
수도권 외		5 ~ 17%	3 ~ 12%

《 개 선 》

구 분	세대수 기준	연면적 기준
수도권	15% 이하	“삭 제”
수도권 외	12% 이하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

소규모 중층주택 건설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루어 지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용도지역 구분없이 층수를 일률적으로 7층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하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가로구역의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에서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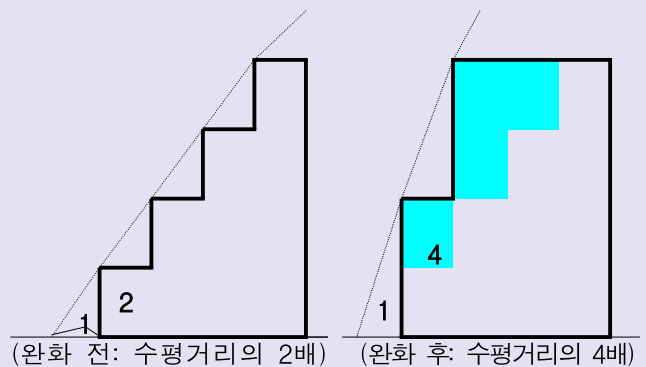
< (예시)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 비교 >

구 분	개선
제1종일반주거지역	국토계획법에 따름 - 4층으로 제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15층 이하 (시·도 조례)
제3종일반주거지역	국토계획법에 따름 - 층수 제한 없음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 1/2 범위에서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채광창 높이제한 기준을 1/2 만큼 완화*함으로써 층수 증가 없이도 개발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아래 하늘 색 표시부분),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를 4배 이하로 완화



《채광창 높이제한 완화 전후 비교》

지붕에 태양광 설치면적 추가 확보를 통해 「제로에너지빌딩」상용화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인근 건물의 채광을 위해 7층 건물에 한정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14.7.17)

이번 개정안이 '15년 1월 중에 공포될 경우, 개정된 시행령은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필요한 기간(4개월)이 경과된 후인 '15년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될 것을 전제로 도입된 재정비 관련 규제를 달라진 시장 상황과 높아진 주거환경 개선 수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관련 고시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함에 따라 일시에 재건축이 급증할 우려는 크지 않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사업을 완료하는데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특히 90년대 이후 지어진 중고층 아파트는 이미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 확보도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일시에 재건축 수요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비용 등을 분석하여 재건축 여부를 결정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재건축사업 추진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인허가시기 조정 등을 통해 대처할 계획이다.

* '14.12월 국토부와 서울·경기·인천 간 이주수요 공동관리에 합의하는 MOU 체결

* '15.2월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 확대: 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수가 500호를 초과하고, 같은 법정동 안에 위치한 1개 이상의 다른 정비구역의 기존 주택수를 더한 합계가 2,000호를 초과할 때도 인허가 시기 조정 가능 (서울시 조례)

또한 재건축 이주수요 증가로 인하여 재건축 단지과 인근 거주 세입자들의 주거가 불안해 지지 않도록 금년도에 공급계획물량(4만 → 5만 호)이 확대된 매입·전세임대 1만호를 전월세 가격 우려지역에 집중투입하여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3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종합대책 마련

- ▶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1社1공구제 폐지 등 입찰방식 선진화
- ▶ 담합사건 장기화방지, 입찰제한제도 개선으로 불확실성도 완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건설산업 입찰담합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조기적발 시스템 마련, 입찰제도·발주방식 개선, 개인처벌 강화 등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첫째, LH·도로공사·수자원공사 등 주요발주기관은 금년 상반기까지 기관별 실정에 부합하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을 개발·운용한다.

* 철도시설공단은 '14.10월부터 담합징후 포착시스템 구축·운영 중

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에 담합징후가 포착되면 해당업체 입찰탈락, 공정위 고발조치가 진행됨을 미리 알려 업체의 담합유인을 차단하는 등 입찰담합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한다.

둘째, 입찰제도 및 발주방식 선진화를 통해 건설산업에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입찰담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며, 『종합심사낙찰제』는 금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6.1월부터 본격시행된다.

* 14년, 15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16년부터 제도 본격시행 ⇨ 『국가계약법령』 개정('15.7~11월), 계약예규 제정('15.10~12월)

아울러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해왔던 실적공사비 제도도 전면 개편하여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다양한 가격들을 수집하고 검증하게 된다.

또한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여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있던 『1社1공구제』는 폐지한다.

셋째,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개인의 입찰담합 행위를 억제한다.

* (현행) 입찰담합 부정행위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선) 입찰담합 부정행위시,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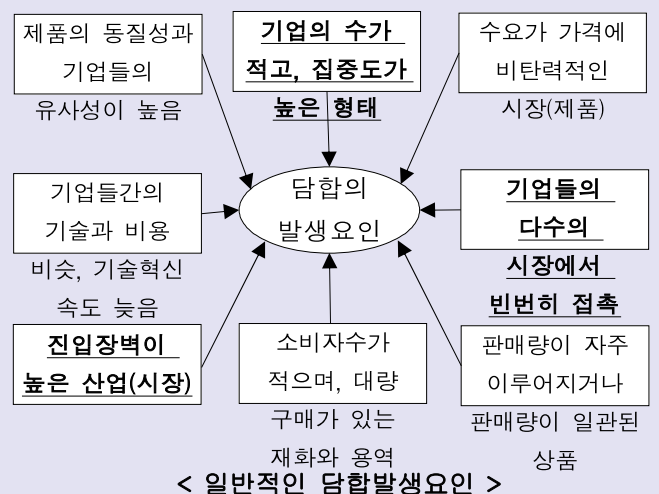
넷째, 건설업계가 투명성을 토대로 윤리·준법경영을 지향할 수 있도록 기업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향후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을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발방지노력을 추진하게 된다.

이외에도 담합사건의 장기화 방지, 입찰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기인지한 입찰담합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담합사건의 장기화를 방지해 나간다. 또한 입찰참가제한 제도에 제척기간(5년)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현재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입찰참가제한 제도를 위법성 정도, 책임 경중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안별로 제한의 범위나 제한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찰참가제한 제도도 선진국 사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끝으로, 해외건설 수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의 문제 제기시 우선 현지공관의 주재관이 직접 발주처를 방문하여 해명하는 등 신속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수주비중이 높고 수주경쟁이 치열한 중점협력국가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체 사회봉사활동 홍보자료를 '15.3월까지 제작, 배포하여 우리기업의 이미지 향상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금번 대책으로 건설산업계의 입찰담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마련하고 담합관련 건설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부는 금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차질 없이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

- 공사수행능력 : 동일공사 시공실적, 기술자경력, 과거공사 결과 평가점수 등으로 평가
- 가격 : 예정가격, 입찰자 평균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점수로 산정
- 사회적책임 : 고용, 공정거래, 건설안전 실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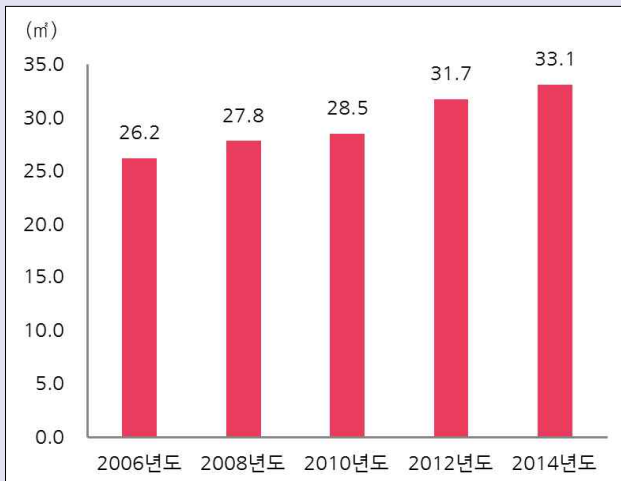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O44)201-3504

1인당 주거면적 33.1㎡...주택보유 의식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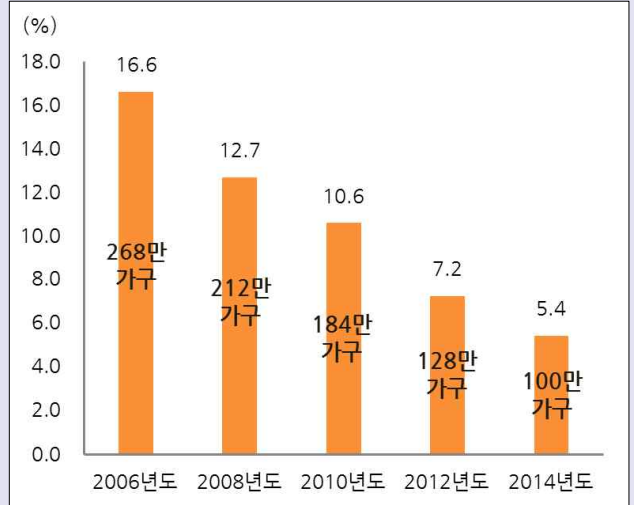
▶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주요지표, 주거수준·환경 만족도 높아져

1인당 주거면적은 '12년도 31.7㎡에서 '14년도에는 1.4㎡ 증가한 33.1㎡로 나타나 주거의 양적수준이 향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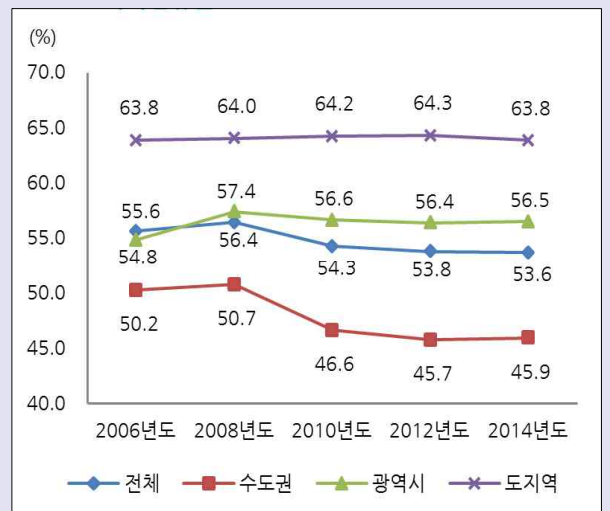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2년에는 전체가구의 7.2%인 128만 가구에서 '14년에는 5.4%인 100만 가구로 감소하여 주거의 질적수준이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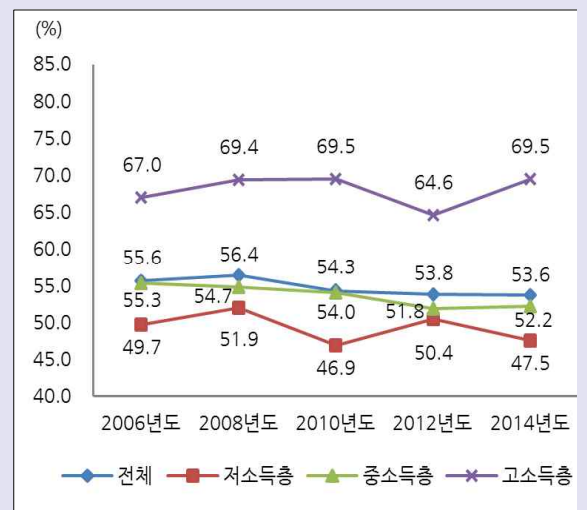
<1인당 주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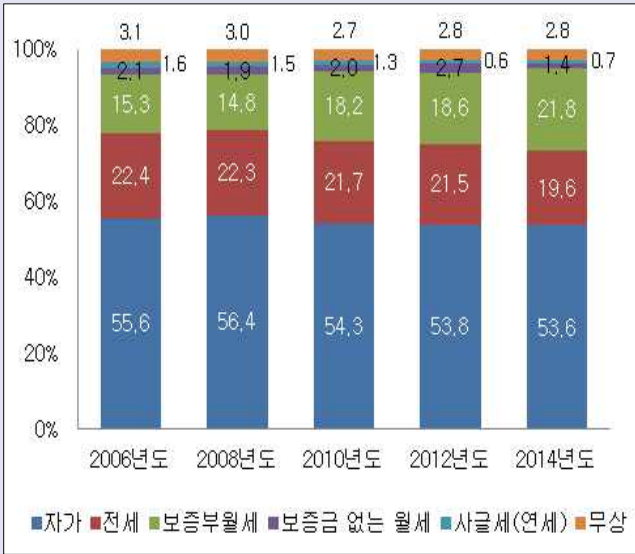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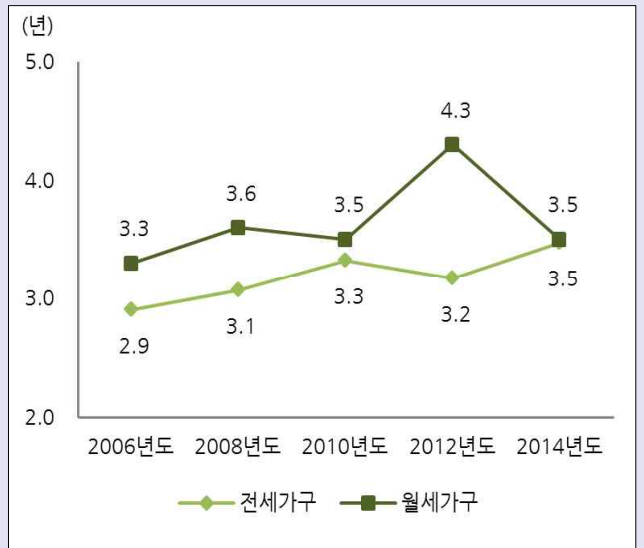
<지역별 자가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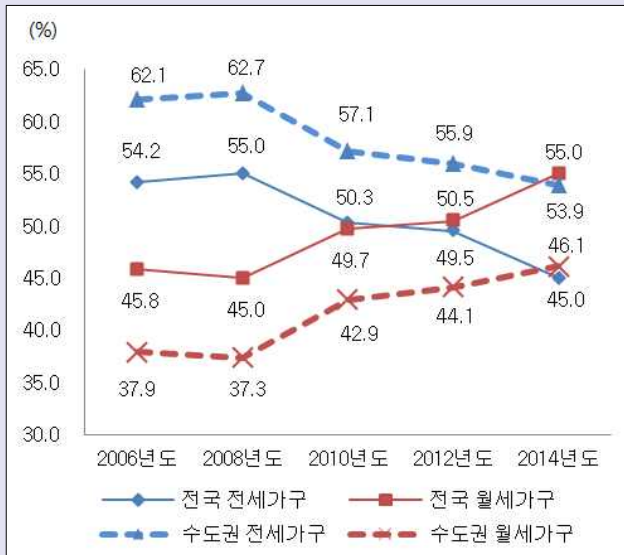
<소득계층별 자가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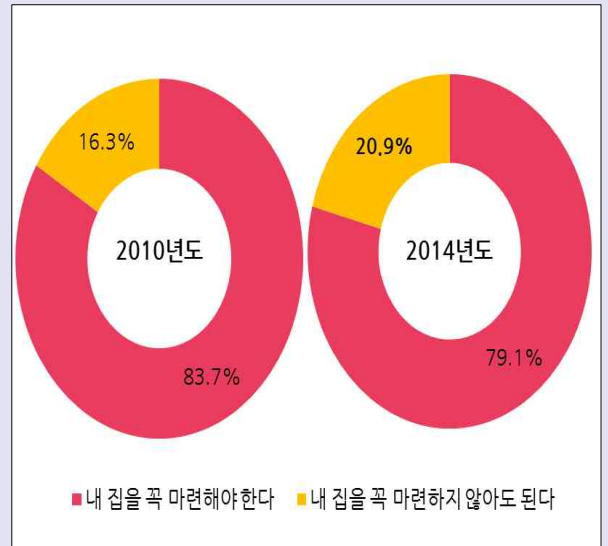
< 주택 점유형태 비율 >



< 전세, 월세 가구 평균거주기간 >



< 차가가구 중 지역별 전·월세가구 비율 >



<주택 보유의식>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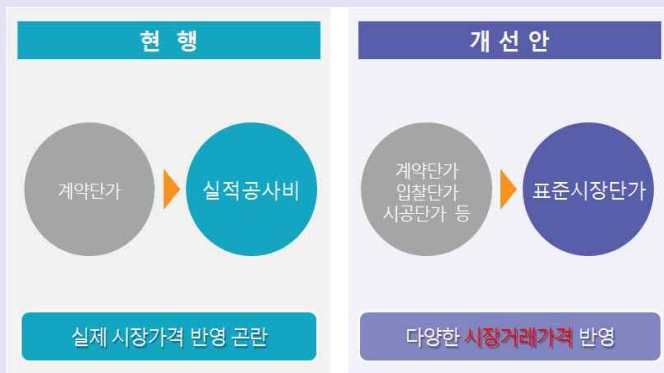
시설물 안전 및 품질 확보 위해 공공건설 공사비 결정방식 개선

▶ 관계부처 합동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발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장의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경직된 정보 수집체계를 개선하여 계약단가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가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검증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한다.



② 중소·중견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존의 실적공사비 가격정보를 탄력 적용한다.

“표준시장단가” 공종이 약 2천여개에 달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300억원 미만(적격심사공사) 공사에 대해 기존의 가격정보 적용을 배제한다.

구 분		현 행
300억원↑	최저가입찰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은 낙찰률 99.7% 보장
300억원↓	적격심사 입찰	별도 보장 없음 (실적공사비 단가 하락요인)

개 선(안)	
현행과 동일	
단가 현실화 수준 등 감안, 실적공사비 신축 적용	

③ “표준시장단가” 제도 운영방식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 발주청 위주로 진행되어 왔던 가격 관리·운영방식도 개선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청, 전문가, 업계 등이 함께 가격을 결정하는 참여형 운영방식을 구축하고 가격정보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독립된 센터(가칭 “공사비원가 관리센터”)를 설립하여 표준시장단가를 전담 관리토록 한다.



④ 사업의 난이도 및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가격 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공사별·지역별 특수성에 따라 자재운송비, 노무비 등의 가격정보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격보정체계를 구축한다.

현행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단가 수집 • 물가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수집 • 시장시공상황에 따른 검증수정 • 지역작업조건 등에 따른 보정 • 물가보정
실적공사비 단가	표준시장단가

⑤ 주요 “표준시장단가”들은 우선 조사하여 현실화한다.

현장의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해 사용빈도가 높고 지나치게 낮은 가격 정보들은 금년 상반기 중에 우선 조사하여 현실화한다.

“표준시장단가” 공종이 약 2천여개에 달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300억원 미만(적격심사공사) 공사에 대해 기존의 가격정보 적용을 배제한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5년 내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1



국토교통부 금년도 141건 신규공사 발주

▶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73% 상반기 발주 예정

국토교통부는 2015년 국토교통부 소관 SOC 사업의 신규 발주계획은 전년대비 33건이 증가한 총 141건이라고 밝혔다.

도로 부문은 당진 ~ 천안 고속도로, 광주순환 고속도로 등 34건(1,057억원)으로 '14년 대비 11건이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당진 ~ 천안 고속도로는 항만과 국가기간산업시설이 밀집한 서해안 지역의 물류수송망 확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 부문은 서해선(홍성 ~ 송산), 중앙선(도담 ~ 영천, 영천 ~ 신경주), 보성 ~ 임성리 철도 등 30건(1,182억원)을 신규 발주할 계획이다.

수자원 부문은 주암댐 도수터널시설 안정화 사업,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 등을 위해 57건(526억원)의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주암댐 도수터널은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전남동부권지역의 용수를 공급하는 국가기반 시설이나, 기존 주암댐 도수터널의 구조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안정화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평택고덕산단, 세종명학산단, 경산4산단 등 20건(2,215억원)의 진입도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실 (044)201-32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 입법예고일 : 2015. 01. 21.(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38호)
- 예고기간 : 2015. 01. 21. ~ 2015. 01. 27.

□ 개정이유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14.12.28)에서 발표된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 입지규제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이 입지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종류와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어린이집 입지 허용을 1만㎡ 이상의 모든 공원(묘지공원 제외)으로 확대
 - 다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업단지에 한해 1만㎡ 미만의 도시공원에도 허용(안 제11조제2항제9호)
- 나. 기타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타 법령명 및 용어 등의 오류 수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 입법예고일 : 2015. 01. 29.(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 예고기간 : 2015. 01. 29. ~ 2015. 02. 24.

□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정하여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2956호, 2014.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대상인 동식물 관련 시설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한편, 유아숲체험원 시설, 풍력발전시설 및 지열에너지 설비 등을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추가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대상 동식물 관련 시설 범위 규정(안 제41조의3제4항)
개정 법률('14.12.31 공포)에서 위임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범위를 영 별표 1제5호가목의 동식물 관련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종류 확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내 유아숲체험원 시설을 신규로 허용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풍력발전시설 및 지열에너지 설비 등을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자 함.
- 다.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규제 완화(안 별표 1제5호나목)
시장·군수가 인정·공고한 지역특산물의 가공을 위한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을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지역특산물의 범위에 시·도지사가 인정·공고한 것도 포함하고,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로 200제곱미터 이하까지 완화함으로써 구역내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라.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요건 완화[안 별표 1 제5호라목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을 취약지구 안에서만 건축하도록 한 것을 취약지구 밖의 자기 소유 토지에도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도시공원부지에서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 입법예고일 : 2015. 01. 28.(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3호)
- 예고기간 : 2015. 01. 28. ~ 2015. 02. 17.
- 개정이유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 (2015. 1. 20)됨에 따라 법률 개정내용과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위특례 적용의 일반기준 완화

행위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최소면적을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개정안 2-2-1)

나. 비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명확화

민간공원 특례제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 명확히 규정
(개정안 2-3-2)

질의 회신

① 질의요지

가 도 시·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할 경우 5년 이내에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 정비 할수 있는지 여부
나 도 시·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할 경우 일부지역에 한하여 변경정비 할수 있는지 여부

② 회신내용

- 질의‘가’에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7-1-2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동 지침1-7-2-1(5)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재정비에 의한 조정인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4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또는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규정에 따른 정비는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 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다만 동 법시행령 제9조 9제호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추가로 검토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2270, 2013.06.19>

질의 회신

① 질의요지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1조 및 제2조 법 시행령 제5조 5제항에 의하면 도시지역내 복합용도 개발이 전적지 및 휴토지의 효율적 개발·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내용으로 용도지역간 변경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위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용도지역간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면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② 회신내용

- 법 제1조1제항 제의 및 제의에 의하면 도시지역내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지역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이전적지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고 법 제2조2제항 및 법 시행령제5제항에 따르면 위 구역에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용도지역간 변경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제8조8제항 및 법 시행령제2조2제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변경 포함하는사항은 ‘지방의회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심의가 아닌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처럼 지구단위계획내용에 용도지역간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라면 법 제8조8제항 및 법 시행령 제2조2제항에 따라 ‘지방의회의견청취’ 없이 공동위원회심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도시정책과4067, 2014.05.20>

이산화탄소와 염소이온 고정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수공법(BNB 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비앤비
	(주)건화
	(주)도화엔지니어링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50호
- 보호기간 : 2014.12.19.~2019.12.18
- 기술분류 : 토목/토목구조물 보수보강/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건축/보수보강/콘크리트구조물 보수, 보강
- 내용요약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에 의한 콘크리트 탄산화와 염화물이온에 의한 염해 등의 열화현상으로 철근이 부식하게 된다. 따라서, 열화현상에 의해 콘크리트의 pH가 낮아질 경우 알칼리 성분의 무기계 아질산염 함침제를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pH를 상승시키는데 이 함침제는 유해가스를 방출하고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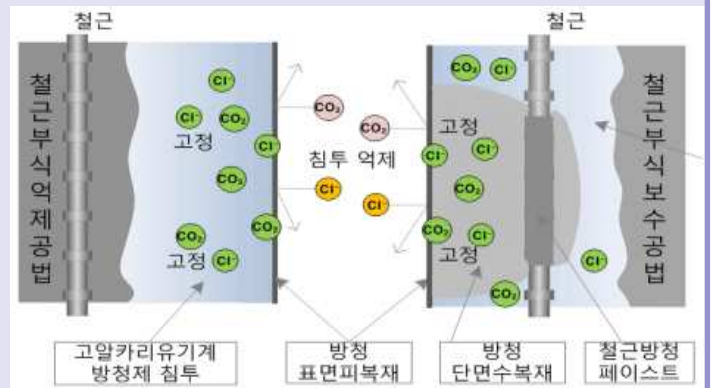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미노알콜 유도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알칼리 회복이 우수하며, 독성이 없는 친환경적인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를 신기술로 개발하였다.

이 유기계방청제는 이산화탄소와 염화물이온과 반응하여 고정되는 특징이 있어 이들의 침투를 차단하고, pH 농도가 기존 10에서 12이상의 고알칼리로 제조되어 알칼리 회복이 우수하다.

또한, 고알칼리 유기계방청제를 혼합하여 방청표면피복재와 방청단면복구재를 제조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탄산칼슘(CaCO₃)을 생성함으로써 구성재료의 공극을 충전시켜 유해가스나 이온이 침투하는 것을 억제한다. 이는 조개, 굴의 껍질을 만들어 내부를 보호하는 원리를 모방한 것이다.

콘크리트의 손상과 철근 부식을 방지하여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므로 기존기술대비 47%~60%의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으며, 중금속 검출시험에서도 납, 카드뮴, 비소, 수은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법의 통과로 향후 20년 이상의 노후아파트의 보수에 본 신기술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외신기술의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수 원리》

세계 물탱크 수출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외부보강형 물탱크를 보급하고 있으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구조안정성과 내진안전성을 확보한 신기술의 물탱크가 향후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4.방청 단면복구재 시공 5.방청 표면피복재 시공 6.마감 도장

《신기술의 철근부식보수공법 시공 순서》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산화탄소(CO2) 와 연소이온(Cl-) 을 화학적으로 고정하는 고알칼리 유기계 방청제(아미노알콜 유도체 이용), 방청표면피복재 및 방청단면복구재를 사용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보수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https://www.kaia.re.kr/>)건설 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보강리브와 헌치 및 파형철선 전단연결재를 이용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Rib-Deck 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신원알피씨
	(주)삼안
	(주)한진중공업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호산업개발(주)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51호
- 보호기간 : 2014.12.22.~2019.12.21
- 기술분류 : 토목>교량>교량 상부구조물
- 내용요약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송, 조립하는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은 일률적인 평판형 단면을 적용하고 있어 다양한 거더형식의 적용성에 한계가 있고, 거더사이의 간격이 증대될 경우 바닥판의 강성이 부족해 처짐 및 균열의 우려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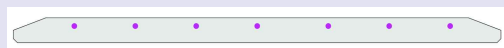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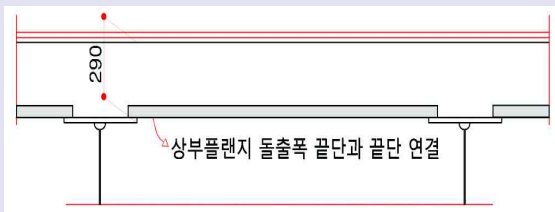
이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하부에 보강리브를, 그 단부에는 헌치를 일체로 형성하여 다양한 거더형식과 거더사이의 간격에 대한 적용성을 증대시키는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림4 참조>

교축에 경사가 있을 경우 기존 평판의 바닥판은 바닥판의 두께를 변화하여 시공해야 하므로 필요치 않은 콘크리트 물량이 소요되나, 신기술의 바닥판은 바닥판 단부에 헌치부 단면을 형성하여 물량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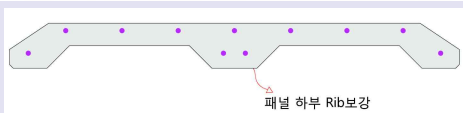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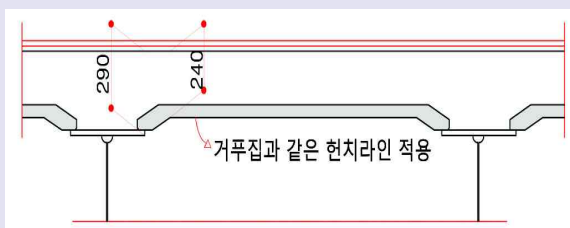
또한, 바닥판 패널과 현장타설 콘크리트가 일체로 거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기존의 트러스형태의 전단연결재는 전단연결재 사이로 현장 바닥판 철근을 끼워 넣어야 하는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신기술의 전단연결재는 파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 철근배근을 용이하게 개선하였다.

현장 바닥판 철근배근의 시공성 향상으로 기존 프리캐스트 공법보다 공사기간이 단축되며, 보강리브와 헌치부에 의한 휨강성 증가로 교량 바닥판의 균열 및 처짐을 최소화 하므로 유지관리비용도 1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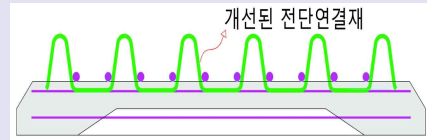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의 단점을 보완한 신기술이 향후 다양한 교량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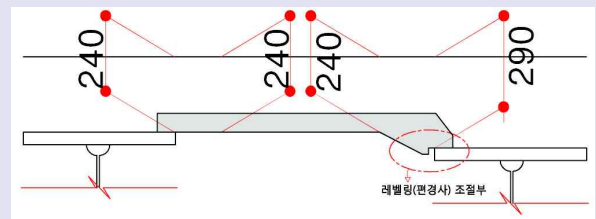
《그림 3》 기존 교량용 바닥판 단면》



《그림 4》 신기술의 교량용 바닥판 단면》



《신기술의 전단연결재》



《신기술의 교량용 바닥판 헌치부》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강성 증가용 보강리브와 종·횡방향의 구배 조절용 헌치가 하면에 일체로 형성되고 파형 전단연결재가 상면에 설치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https://www.kaia.re.kr/>) 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조립식 강재 반력대 및 강선 비부착 기법을 적용한 단부형고 증대형 PSC I형 거더 제작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한맥기술
	(주)장헌산업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52호
- 보호기간 : 2014.12.22.~2019.12.21
- 기술분류 : 토목>교량>교량거더
- 내용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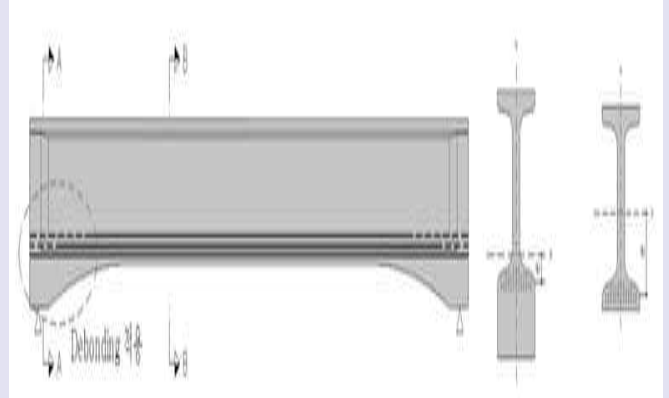
PSC I형 거더는 구조적 거동이 우수하고 시공성이 용이하며 경제성이 우수하여 국내·외에서 중소지간(30~50m)에 다수 적용되고 있는 교량 형식이다.

PSC I형 거더의 프리텐션 방식*에서 강선(긴장재)의 부분 비부착을 사용하는 경우, 국내외 설계기준에서 강선의 비부착량을 전체 강선의 25%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단면 응력 조절이 용이하지 못하고 거더 단부 상연에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문제가 있다.

* 프리텐션 방식 : 반력대를 이용하여 미리 강연선을 긴장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 프리스트레싱을 도입 가능하다.

이에 현장조립식 강재 반력대를 이용하여 거더의 단부형고를 증대시킨 프리텐션 PSC I형 거더 제작 기술을 신기술로 개발하였다. 단부형고를 증대시킴으로써 프리텐션 거더의 단부 상연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인장응력 제어가 가능해 진다.

품질시험을 통해 도로교 설계기준의 요구성능보다 우수함을 입증하였으며, 기존 프리텐션 공법보다 10%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신기술의 PSC I형 거더 형상》



《신기술의 이동식 반력대》



《신기술의 거더를 적용한 교량》

이 신기술은 현장조립이 가능한 이동식 반력대를 사용하므로 자본이 부족하고 운반로의 확보가 어려운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의 해외에도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현장조립식 강재 반력대를 이용하여 강선을 직선 배치한 프리텐션 거더에서 단부의 강선 비부착율을 2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단부형고를 증대시킨 프리텐션 PSC I형 거더제작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https://www.kaia.re.kr/>)건설 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의 풍하중에 의한 수평진동 제어를 위하여 이동 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동질량감쇠기 기술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

2. 교통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53호
- 보호기간 : 2014.12.29.~2019.12.28
- 기술분류 : 건축>특수 건축물>초고층 건축물
- 내용요약

건축물이 고층화 될수록 바람에 의한 진동으로 구조적인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거주자의 구토, 어지럼 증상 및 불쾌감 유발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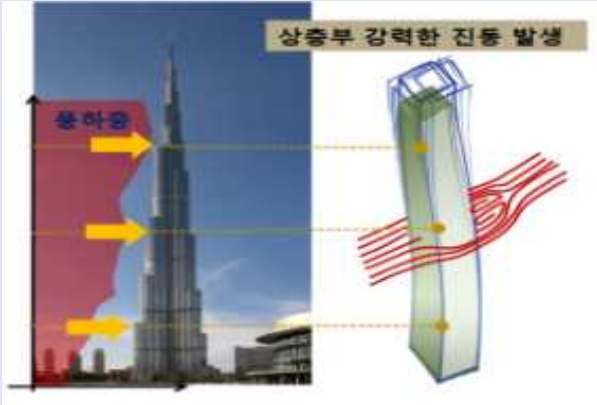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층건물의 수평진동을 제어할 수 있는 제진장치가 국내 최초로 개발되었다.

이 신기술은 장치의 질량이 가지는 관성력에 의한 에너지 흡수방법(질량형 제진장치)을 이용하여 건물의 진동에너지가 줄어들게 함으로써 진동을 줄이는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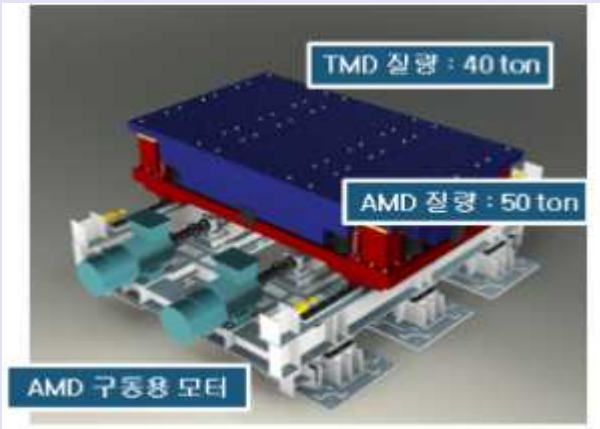
또한, 건물의 연직진동과 바람에 의한 수평진동이 동시에 발생하면 제진장치의 40톤과 50톤의 철판이 상하방향과 수평방향으로 움직여 두 방향의 진동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제진실험 결과에서 풍진동의 절반수준으로 진동이 감소되어 진동저감효과가 우수함을 확인하였으며, 일본의 제진장치보다 공사비가 36%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이 신기술은 국토교통부 R&D 연구성과로서 2011년 진동사고가 발생한 서울 테크노마트에 이 제진장치를 적용하여 진동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풍하중에 의한 진동 발생》



《능동형 제진장치》

전세계적으로 초고층 구조물의 건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순수 국산기술의 진동 제어장치가 해외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조물의 풍하중에 의한 수평진동 제어를 위하여 이동 변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능동질량 감쇠기의 속도입력모터 컨트롤러를 이용한 변위제한기술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https://www.kaia.re.kr/>) 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신기술 설계반영 관련절차

1. 적용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신기술 활성화 및 기술사용료의 적용기준)

2. 반영방법

[신기술 전부]

- 객관적 타당하고 해당요건을 충족시 수의계약, 지명경쟁 가능.
- 발주부서는 위와같은 방법으로 시행코자 할 경우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함.

[신기술 일부 포함]

- 발주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
- 기술개발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 범위·하도급 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뢰

신기술공사비	기술사용요율(%)
1억원 이하	8.5
2억원	8.3
5억원	8.0
10억원	7.5
20억원	6.8
50억원	6.0
100억원	5.0
100억원 초과	3.5

3. 심의 관련규정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등에 관한기준 제2조
 -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

⇒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등에 관한기준 제 4조
 - 위원회의 심의 등
- ⇒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활용범위 여부

4. 처리절차

- 설계발주 → 특허·신기술 필요 시 → 특허 등 유사 공법 등 검토
- 심의(자문)위원회 구성 심의(발주 부서) → 기술보유자와 협약 체결
- 계약부서와 협의 → 설계완료 → 계약의뢰 → 발주 → 계약 → 시공
 - ※ 공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5. 특허등 종류

- 특허 : 특정인을 위해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
 - ※ 특허법 제88조 존속기간 20년
- 신기술 :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새로운 건설기술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인증 기간 3년
- 실용신안 : 실용신안 등록을 받은 고안
 - ※ 실용신안법 제22조 존속기간 10년

6.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사항

- 관련규정 : 경상남도 지방기술심의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호
 -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사항
 - 총금액 100억원이상 기심의를 한 사업중에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공법변경사항에 대한 심의(즉 라멘교 ⇒ 프리플렉스)
 - ※ 공법변경시 : 설계용역사의 의견을 반드시 받아 심의요청

건설기술심의 현황

2014년 제13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건 명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2건, 실시설계 적정성 3건
- 심의일자 : 2014. 12. 23.(화)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심의결과
2014-13-01	대동~매리간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SOQ)	경상남도 (도로과)	조건부
2014-13-02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지구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진주시 (균형개발과)	조건부

의안 번호	요청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발주청	심의결과
2014-13-03	실시설계 (적정성)	무안~내이간 도로확포장공사	· 위 치 : 밀양시 무안면 신법리~부북면 제대리 · 사업내용 : 도로 L=7.24km, B=18.5m(왕복4차로) · 사업기간 : 2015 ~ 2019년(5년)	경상남도 (도로과)	조건부
2014-13-04	실시설계 (적정성)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 위 치 : 고성군 고성읍 무량리~고성읍 죽계리 · 사업내용 : 하천 L=4.7km(축제 0.8km, 호안 3.9km) · 사업기간 : 2015 ~ 2017년(3년)	고성군 (안전총괄과)	조건부
2014-13-05	실시설계 (적정성)	통영 생활체육관 건립사업	· 위 치 : 통영시 평림동 452-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건물 1개동(연면적 5,699㎡, 관람석 1,974석) · 사업기간 : 2015 ~ 2016년(2년)	통영시 (체육지원과)	조건부

2015년 제1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계획

- 건 명 : 실시설계 적정성 2건,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3건
- 심의일자 : 2015. 02. 27.(금)

의안 번호	요청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발주청
2015-01-01	실시설계 (적정성)	거제 행정타운 부지 조성사업	· 위 치 : 거제시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부지조성 A=96,847㎡, 339억원,	거제시
2015-01-02	실시설계 (적정성)	합천 대장경기록 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 위 치 :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로 1160 일원 · 사업내용 : 건물 4개동, 150억원	합천군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2015-01-03	밀양 단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SOQ)	밀양시
2015-01-04	창원 덕산조차장 이전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창원시
2015-01-05	창원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창원시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를담당
(055)211-4626

계약심사 현황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4년 1월	계	35	43,746	41,562	2,184	4.99%	
	공사	토목	9	35,523	33,686	1,838	5.17%
		건축	3	3,258	3,016	242	7.44%
		기타	-	-	-	-	-
	용역	9	3,543	3,462	81	2.28%	
물품	14	1,422	1,399	23	1.65%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사팀당
(055)211-3548

나눔 정보

2015년 국가기술자자격 검정시행일정

회 별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 문 제 출) ·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실기(면 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기술사	제105회	1.9~1.16	2.1	3.27	3.30~4.8	4.25~5.4	5.22
					3.30~4.2		
	제106회	4.10~4.16	5.10	6.19	6.22~7.1	7.25~8.3	8.21
					6.22~6.25		
	제107회	7.3~7.9	8.1	9.18	9.21~10.02	10.17~10.26	11.13
					9.21~10.26		
기사 (산업기사)	제1회	1.30~2.5	3.8	3.20	3.23~4.1	4.18~5.1	5.8
	제2회	4.24~4.30	5.31	6.12	6.15~6.24	7.11~7.24	7.31
	제3회	7.24~7.30	8.16	8.28	8.31~9.9	10.3~10.16	10.23
	제4회	8.21~8.27	9.19	10.8	10.12~10.21	11.7~11.20	12.18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토교통부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변화

- ① (지원대상 확대)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
- ② (지원방식 다변화) 기존 단순 용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 →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
- ③ (기금 전담 운영기관) 기금 관리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

▶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 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월세대출 상품 출시
- ② 2.0% 저금리로 ①취업준비생, ②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③근로장려금수급자 대상
- ③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 (다만,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

▶ 주택청약제도 전면 개편

<'15. 3월 이전 시행예정>

- ①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완화
- ②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③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④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⑤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15. 7.1 시행예정>

- ⑥ 청약통장 유형 단순화
- ⑦ 청약대상 주택유형 단순화

▶ 파독(派獨) 근로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 ① 파독(派獨)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② 대한민국의 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 규제 완화

- ①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단축(10년→8년)
- ②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부여
- ③ 연립·다세대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층수제한 완화

국토교통부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

- ① 수급대상 확대 : 70만('14년) → 97만 가구('15년)
- ② 월평균 급여액 증가 : 9만('14년) → 11만원('15년)

▶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

- ① 대한지적공사의 명칭을 국토정보공사로 변경하고 업무범위를 조정

▶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장소 이전 시 영업손실보상 등 확대

- ① 영업휴업 보상기간 : 월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 → 4개월로 확대
- ②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신설) : 휴업보상분의 20%(1천만원 상한)
- ③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 5백만 원 → 6백만 원

▶ 보상전문기관 확대

- ① 보상전문기관 확대 : 현행 8개(LH공사 등) → 21개(부산도시공사 등 13개 추가)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 ① 주택(매매 6~9억원, 임대차 3~6억원)의 중개보수요율 신설
- ②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 신설

▶ 개발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개발사업자의 부담완화

- ①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 학교용지부담금, GB보전부담금 등 타 부담금 비용인정 확대 (7→14개), 진입로 개설비용 인정, 개발비용 적용시점 변경(부과개시시점 이전 투입된 용역비, 준공후 납부한 지목변경취득세 인정)

▶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 한곳에... '건설워크넷' 운영

- ①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보유한 건설기술자의 정보(약 2억개)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구인·구직 지원

▶ 취약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횟수를 확대조정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을 완화

- ① 취약시설물(D,E급) 정기점검 시기 변경(반기 1회 이상→1년 3회 이상)
- ②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 등록기준 완화(중급기술자 중 '기사' 자격)
-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장비보유 등록기준 완화('비디오카메라' 삭제)

국토교통부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도시내 용·복합개발 촉진

- ① (지정대상) 도시지역 중에서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지역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 노후·쇠퇴지역의 정비가 필요한 주거·공업지역 등
- ② (지정기준) 도시기본계획의 부합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도시환경 개선·정비효과 등
- ③ (완화내용)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건축물 용도, 용적률, 건폐율 등 완화
- ④ (지정절차) 지자체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안) 입안 → 국토부에 결정 신청 → 관계기관협의 → 중도위심의 → 국토부결정('18년부터는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

▶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

- ① 공공청사, 학교, 문화·체육시설, 터미널 등 기반시설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 판매점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 확대

▶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 ①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범위 완화(20호실이상→30호실 이상)
- ② 분양건축물 수의계약 요건 완화(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면적이 일정요건에 미달될 경우 2차 공개모집 후 수의계약 가능 → 최초 공개모집 후 수의계약 가능)
- ③ 오피스텔 분양계약서표시 전용면적 산정방법 일원화(중심선치수 → 안목치수)

▶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에 대한 본격 지원

- ①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관계법령에 따른 특례적용
- ②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을 통한 관례법령의 특례적용
- ③ 한옥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및 관계법령에 따른 특례적용

▶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는 인터넷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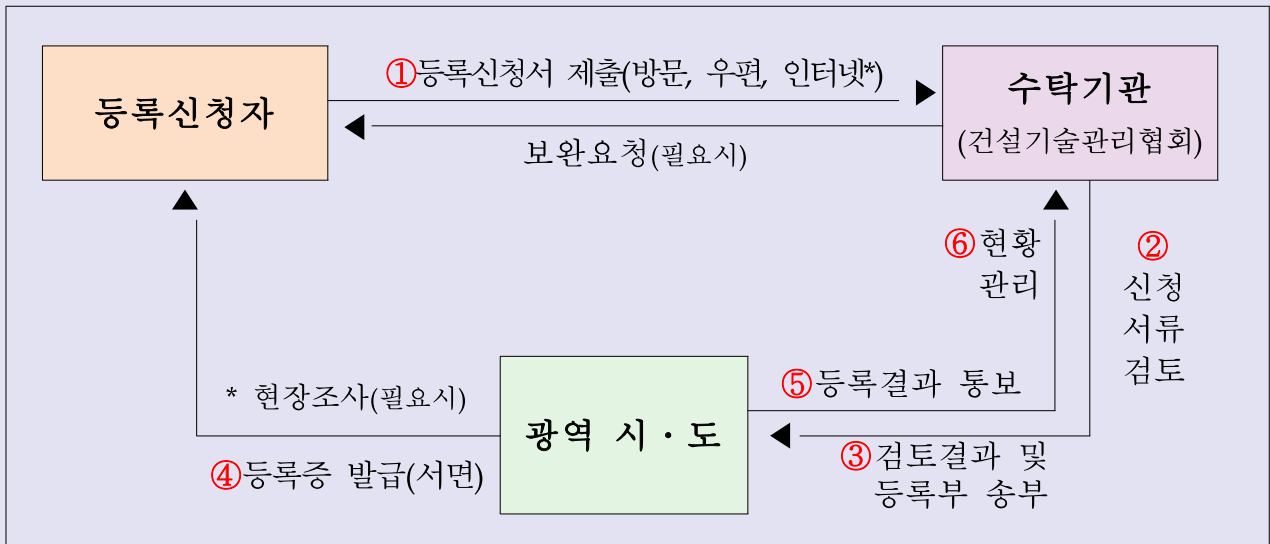
- ①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신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 접도구역 폭 축소(20→10m), 지정제외 확대

- ①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10m로 축소
- ② 전체 지구단위 계획에서 접도구역 지정 제외
- ③ 군도 접도구역 지정 제외
- ④ 접도구역 내 농업용 축사·창고의 신축 기준 완화(연면적 20㎡→30㎡)
- ⑤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추가 허용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안내

- 2014. 5. 23.자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등의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단일화 되었으며, 이와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민원의 접수·확인 및 관리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 현행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1년 이내(2015. 5. 22.까지) 변경 등록하여야 함.



- <① 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신청인)
- <② 단계> : 신청서 접수, 고유 관리번호 부여, 서류 검토(관리협회)
- <③ 단계> : 등록서류 검토결과 통보(관리협회→해당 시·도)
- <④ 단계> : 등록증 발급(해당 시·도→신청인)
- <⑤ 단계> : 등록결과 통보(해당 시·도→관리협회)
- <⑥ 단계> : 등록결과 접수, 용역업자 등록번호 등재·관리(관리협회)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ccs0673@korea.kr(담당자 최춘수)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